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1차년도 15개소에 이어, 2차년도 24개소 시범인증 부여
-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및 '인증서' 부여
-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이행 여부 지속 점검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하였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하여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 * 신청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바우처 민간 제공기관 포함)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하였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였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하였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증 현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2023년도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3.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203)



붙임 1

2023년도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인증번호	지역	기관명	대표자	인증기간 (시작~종료)	비고
제2023-01	경기	(주)아이맘케어	김정은	'23.12.5.~'26.12.4.	
제2023-02	대구	(주)이레아이맘	최경옥	'23.12.5.~'26.12.4.	
제2023-03	경기	(A+)구리남양주 친정맘	엄정은	'23.12.5.~'26.12.4.	
제2023-04	서울	fm산후도우미	박경화	'23.12.5.~'26.12.4.	
제2023-05	경기	누리맘	심혜경	'23.12.5.~'26.12.4.	
제2023-06	대전	도담도담산후도우미(대전점)	유선희	'23.12.5.~'26.12.4.	
제2023-07	울산	바우처 베스트맘	이미화	'23.12.5.~'26.12.4.	
제2023-08	경남	베스트맘진주	박정옥	'23.12.5.~'26.12.4.	
제2023-09	서울	산모도우미119	서강규	'23.12.5.~'26.12.4.	
제2023-10	서울	참사랑어머니회	박진우	'23.12.5.~'26.12.4.	
제2023-11	대구	참사랑어머니회	홍종미	'23.12.5.~'26.12.4.	
제2023-12	경남	참사랑어머니회창원지점	김현숙	'23.12.5.~'26.12.4.	
제2023-13	경기	(주)마인드스토리 심리상담센터	김진아	'23.12.5.~'26.12.4.	
제2023-14	서울	단비아동발달청소년심리센터	김은미	'23.12.5.~'26.12.4.	
제2023-15	충남	더나은내일아동가족상담센터	임행정	'23.12.5.~'26.12.4.	
제2023-16	충남	쥬쥬아동발달센터	장은주	'23.12.5.~'26.12.4.	
제2023-17	경기	행복한우리심리상담센터	지옥진	'23.12.5.~'26.12.4.	
제2023-18	대전	(주)명품사회서비스센터	배승대	'23.12.5.~'26.12.4.	
제2023-19	경기	빅아트센터	김남희	'23.12.5.~'26.12.4.	
제2023-20	인천	(주)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	김태우	'23.12.5.~'26.12.4.	
제2023-21	경남	손일현소아청소년발달연구소*	손일현	'23.12.5.~'26.12.4.	
제2023-22	강원	아동발달센터프롬아이*	김선희	'23.12.5.~'26.12.4.	
제2023-23	경기	이화자람아동발달센터*	유지승	'23.12.5.~'26.12.4.	
제2023-24	경기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김광태	'23.12.5.~'26.12.4.	

* 해당 인증은 발달재활서비스(지정제)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에만 유효함

□ **추진배경**

-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구매력 있는 중산층으로 수요 확대 등 사회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점검·확인 중심의 의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유도를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

* 인증을 통한 국가의 서비스 품질 담보 → 인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수요 증가 →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의 자발적 질 제고

□ **인증 개요**

- (주체/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 (기준)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

- (혜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서·인증현판 수여, 기관홍보물·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홍보 지원 등

*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서비스 인증기관 명단 공개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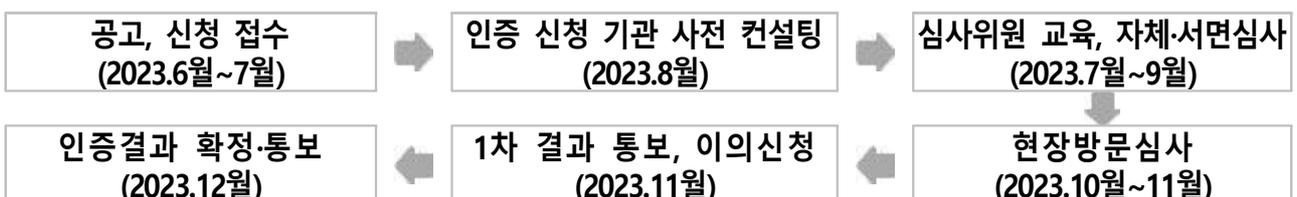
- (사후관리) 자체보고서 제출 → 현장 인터뷰 → 전문 컨설팅 → 간담회

* 사후관리 및 민원·제보에 따라 중대한 사안 발생시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총괄 ·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 수립
중앙사회서비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운영 지원·관리 등 사무 - 인증 기준 관리, 성과분석 등 · 인증심사위원 관리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일정**



영역	품질인증기준(12)		품질인증지표(32)
I. 서비스 운영	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확립	1.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체계
			1.1.2 서비스 운영 규정의 공유
	1.2	서비스 기반구조의 운영	1.2.1 서비스 제공환경의 적합성
			1.2.2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관리
			1.2.3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의 운영
	1.3	서비스 제공과정의 운영	1.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1.3.2 계획기반 서비스 실행 관리
			1.3.3 목표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1.3.4 서비스 종결 관리
	II. 인적 자원	2.1	인사관리체계의 운영
2.1.2 인력 모집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			
2.1.3 근무평정체계의 운영			
2.2		복무관리체계의 운영	2.2.1 복무관리규정의 적절성
			2.2.2 종사자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
III. 안전· 예방	3.1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1 시설안전관리규정 운영의 적절성
			3.1.2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3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3.2	위험예방체계의 운영	3.2.1 위험예방체계의 적절성
			3.2.2 위험예방체계의 이해관계자 공유
	3.3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3.3.1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운영
3.3.2 문서 및 기록 관리지침의 운영			
IV. 재정 건전성	4.1	재무(회계) 관리 체계의 확립	4.1.1 회계규칙(규정) 운영의 적절성
			4.1.2 회계처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4.2	재무(회계) 책무성 강화	4.2.1 회계결산 체계의 운영
			4.2.2 회계감사 체계의 운영
V. 경영 관리	5.1	기관운영규정의 운영	5.1.1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운영규정 확립
			5.1.2 사회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5.1.3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정 및 회계 관리
			5.1.4 사회서비스 기관의 시설안전 및 정보관리
			5.1.5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5.2	PDCA기반 사업계획의 운영	5.2.1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5.2.2 사업계획의 실행 및 평가	